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 (2018년도-제3차)

- 일 시 :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14:00 ~ 15:00
- 장 소 : 초량교회 접견실
- 참석이사 : 김○○이사장, 한○○이사, 박○○이사, 이○○이사, 김○○이사, 동○○이사
- 불참이사 : 심○○이사
- 예 배 : 김○○이사장이 기도하다.
- 안 건
 - 1. 법인 및 산하기관 2017년도 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 법인 및 산하기관 2018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3.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 4. 임원 임면 승인의 건
 - 5. 카네이션방문요양센터 시설명 변경(안) 승인의 건

김○○ 이사장은 의장석에 착석하여 이 법인 정관이 정한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이사 정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제 1. 법인 및 산하기관 2017년도 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단위: 원)

시 설 명		2017년 예산	2017년 결산	증감	비고
빛과소금복지재단		2,497,277,386	2,463,582,804	▼33,694,582	
	법인 사무국	115,838,774	118,228,669	2,389,895	
	우리동네영어학교	118,950,156	118,564,045	▼386,111	
	파랑새그룹홈	99,343,740	99,028,948	▼314,792	
	카네이션방문요양센터	164,610,216	165,533,219	923,003	
	장애인활동지원센터	1,998,534,500	1,962,227,923	▼36,306,577	

(단위: 원)

시 설 명		2017년 예산	2017년 결산	증감	비고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2,445,651,942	2,599,811,486	154,159,544	
	건강가정지원센터	238,116,942	238,114,050	▼2,892	
	아이돌봄지원사업	2,207,535,000	2,361,697,436	154,162,436	
부산사하시니어클럽		2,267,528,804	2,255,483,925	▼12,044,879	

■ 의결 내용

○ 김○○ 대표이사 : 산하 기관별 2017년도 사업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 윤○○ 감사 : 감사 결과 업무집행 내용과 결산의 각 항목은 정확하였고, 그 회계 처리는 적절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사하시니어클럽은 사업단 종류가 다수이고 회계 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상, 하반기 연2회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박○○ 이사 : 빛과소금복지재단 법인 및 산하기관의 2017년도 회계 결산 원안을 승인하기로 동의합니다.

○ 한○○ 이사 : 재청합니다.

2017년도 회계 결산 원안에 대하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됨.

의제 2. 법인 산하기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의 건

(단위: 원)

시 설 명		2018년 본예산	2018년 1차추경	증감
우리동네영어학교		141,835,694	151,882,190	10,046,496
파랑새그룹홈		100,760,865	106,553,928	5,793,063
부산사하시니어클럽		2,464,101,440	2,627,417,709	163,316,269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2,828,859,000	2,868,279,910	39,420,910
	건강가정지원센터	244,967,000	246,827,910	1,860,910
	아이돌봄지원사업	2,583,892,000	2,621,452,000	37,560,000

■ 의결 내용

○ 이○○ 이사 : 2018년도 제1차 추경 예산의 증감요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 팀장 : 우리동네영어학교, 파랑새그룹홈은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 부문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식비,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사하시니어클럽은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사업수입 및 보조금수입이 증가하였고, 신규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량의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전담인력 인건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조정에 따른 기타보조금의 증가와 세출에서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사업비 조정, 기타운영비 감소가 있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보조금수입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 사업비와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 김○○ 이사 : 법인과 산하기관의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 원안을 승인하기로 동의합니다.

○ 동○○ 이사 : 재청합니다.

2018년도 법인과 산하기관 제1차 추경예산 및 사업계획 원안 대하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됨.

의제 3. 빛과소금복지재단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변경 사유 : 임원(감사) 정수 변경에 따름.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및제7항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 개정 조문 :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4항. 감사 2인

■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전 정관 조문	변경후 정관 조문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u>감사 2인</u>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u>감사 3인</u>

■ 의결내용

- 박○○ 이사 :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의 현재의 임원(감사) 정수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함에 따른 정관 변경을 승인하기로 동의합니다.
- 김○○ 이사 : 재청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임원(감사) 정수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을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됨.

의제 4. 임원 임면 사항 승인의 건

■ 임면 사유

- ▶ 이사 정수(7인) 부족으로 3월 21일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및 의결 무효
※ 2018년 2월 28일자로 법인 이사 6인이 됨.
- ▶ 외부전문가 감사 1인 선임

■ 근거

- ▶ 법인 정관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3. 이사 7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3인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임면 사항 (※이력서 별첨)

구 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면 (免)	이 사	이○○	1970. 8. 23.	2018.4.1.~2018.4.25.
임 (任)	이 사	이○○	1970. 8. 23.	2018.5.1.~2021.4.30. (3년)
	감 사	함○○	1981. 1. 22.	2018.5.1.~2020.4.30. (2년)

■ 의결 내용

- 김○○ 대표이사 : 임원 임면 사항에 대하여 승인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김○○ 이사 : 이○○ 이사의 사임에 대하여 승인하기로 동의합니다.
- 한○○ 이사 : 재청합니다.
- 이○○ 이사 : 이○○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승인하기로 동의합니다.
- 동○○ 이사 : 재청합니다.
- 권○○ 이사 : 함○○ 외부전문가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승인하기로 동의합니다.
- 한○○ 이사 : 재청합니다.

임원 임면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됨.

의제 5. 카네이션방문요양센터 시설명 변경 승인의 건

■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명	카네이션방문요양센터	카네이션노인복지센터

■ 변경의 필요성(사유)

- ▶ 카네이션방문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임.
- ▶ 시설의 종류와 사업, 역할 등이 함의된 시설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의결내용

- 김○○ 이사 : 카네이션방문요양센터의 시설명 변경을 승인하기로 동의합니다.
- 동○○ 이사 : 재청합니다.

카네이션방문요양센터의 시설명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됨.

모든 회무를 마치고 15시 00분에 이○○ 이사가 동의하고 박○○ 이사가 재청하여 폐회하고 김○○ 이사장이 기도하다.

2018 년 4 월 24 일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이사장 김 ○ ○

(인)

이 사 한 ○ ○

(인)

이 사 박 ○ ○

(인)

이 사 이 ○ ○

(인)

이 사 김 ○ ○

(인)

이 사 동 ○ ○

(인)

감 사 윤 ○ ○

(인)